[한국지식재산연구원] 논문공모전 워크샵

글쓰기와 연구윤리

J. K. JEONG

PROF. PH.D. IN LAW
LAW SCHOO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IEF
KNU ART&LAW CENTER

IPR 글쓰기

- IPR의 특징
 - IT, Bio, Chemical 기술 + 권리
 - 디자인 + 권리
 - 음악, 미술, 소설, 영화 + 권리

❖ IP의 저변을 이루는 기술/디자인/예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

(c) J. K. JEONG All Rights Reserved.

IPR 글쓰기

- 제1 단계 : 의문 갖기
 - 무엇이 왠지 이상하다?!
 - 왜 이상한가?
 - 사회학적/기술적/법적/공공…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 문제인식을 하기 전에 법학책을 봐서는 안 된다?!
 - 스스로를 굴레에 가두는 법규범!!!
- 의문이 없는 글은 설명문이다!

(c) J. K. JEONG All Rights Reserved.

IPR 글쓰기

- 제2 단계 : 읽고 또 읽어라
 - 사회+과학+논리학+정책학+(해석학*입법학) ≒법학
 - 법학책만 읽어서는 안 된다.
 - 그저 읽고 쌓아만 두어서도 안 된다.
 - 논리적으로 비판만 하고 끝나서도 안 된다.
 - 추상적인 결론은 동네 할아버지들의 술자리에서도 가능한 것!

❖ 시놉시스의 완성은 논문의 시작!!!

(c) J. K. JEONG All Rights Reserved.

IPR 글쓰기

- 제3 단계 : 읽고 또 읽어라
 - 의문을 강화하라!
 - 해법은 법학자의 몫이 아니라 그 세계 사람들의 몫이다!
 - 그 세계 사람들의 생각과 조우하라!
 - 한 사람의 생각에 빠져서 나오지 못 하는 외골수들!!!
 -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도 모두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법학자의 기본이다!

❖ IP 법학자가 되기 전에 그 분야의 업자가 되어야…

(c) J. K. JEONG All Rights Reserved.

IPR 글쓰기

- 제4 단계 : 읽은 것을 기록하라
 - 학문의 시작은 티코 브라헤와 갈릴레이의 어깨 위에서!
 -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는 것은 개미와 같다!
 - 앞선 문명의 개척자들을 경외하자!
 - 그들의 경외는 '인용'으로…
 - '인용'은 한 순간에 되지 않는다!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 기록은 효율적으로, 인용은 명확하게, 인용을 위한 일기장을 손에 들고…

(c) J. K. JEONG All Rights Reserved.

IPR 글쓰기

- 제5 단계 : 글쓰기의 시작
 - 열매가 익기 전에 쓰는 글은 자신을 가둔다!
 - 머리말은 자신의 언어로 당당하게 적어본다!
 -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세라! 듬성듬성 넘겨서는 안 된다!
 - 논증의 과정을 즐기면서, 논증의 우군을 기록하라!
 - 논증의 우군은 내 글의 가치를 높인다!

❖ 논문의 가치는 완벽한 새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군을 많이 확보한 논증에 있다.

(c) J. K. JEONG All Rights Reserved.

IPR 글쓰기

- 제6 단계 : 인용의 활용
 - 인용은 멋진 표현에 활용하라!
 - 인용은 나와 같은 생각을 보강하는데 활용한다!
 - 인용은 나와 다른 생각을 쓰는데도 밝혀야 한다!
 - 너무 뻔한 것들은 인용의 대상이 아니다!
 - 인용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가? 그럼 하자!

❖ 학문은 95%를 97%로 만드는 과정. 2% 모자란 세상에 2%를 얹는 것을 보여주자!

(c) J. K. JEONG All Rights Reserved.

IPR 글쓰기

- 제7 단계 : 인용의 함정
 - 인용하지 않는데 대한 두려움 없애기!
 - 내 모든 생각이 인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내 멋진 생각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같을 수도 있다!
 - 나를 비난하는가? 독자적 창작의 항변을 활용한 방어법!
 - 일반적 지식, 보편적 표현, 다른 것을 보지 않은 생각들!

❖ 인용을 하기 위해 억지로 노력하지 말라 (공중그네 작가의 패러독스)!

(c) J. K. JEONG All Rights Reserved.

인용과 연구윤리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 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c) J. K. JEONG All Rights Reserved.

인용과 연구윤리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서울고등법원 1990. 2. 13. 선고89나32908판결]

[1] 국내 월간잡지의 발행인들이 일본국에서 발행되는 시사주간지의 보도에 근거를 두고 위 잡지에 시사보도를 하는 과정이나 보도, 비평을 위하여 위 시사주간지에 게재된 국내 사진작가의 창작물인 누드사진 중 일부를 인용, 게재하였다 하더라도 인용된 부분이 전라 또는 반라인 젊은 여인의 사진 8점 중 일부이고 "한국 여대생, 연예인 누드사진이 포르노로 둔갑" 또는 "사진예술작품들 일본으로 건너가 포르노성 기획으로 전락"이라는 제목 아래 위 작가의 사진과는 전혀 관계없이 일본국 펜트하우스지에 한국의 여대생이라고 소개되어 실린 젊은 여인의 나체사진을 함께 게재하고 있으며 그 중 한 잡지는 이를 밀봉페이지로 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사진을 게재한 것이 청소년 독자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국도서잡지 주간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사회도덕과 미풍양속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위 사진의 인용, 게재는 그 방법 및 범위에 비추어 시사보도과정에서의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이내이거나 보도, 비평을 위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c) J. K. JEONG All Rights Reserved.

인용과 연구윤리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6. 5. 선고2007가합18479판결]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 영화를 일부 인용한 것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피고 에스비에스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료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한 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화의 인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의 위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c) J. K. JEONG All Rights Reserved.

인용과 연구윤리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서울고등법원 1996. 7. 12. 선고95나41279판결]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인용의 범위는 표현형식이나 인용목적 등에서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인용의 정도에 있어서도 피인용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거나 전부 인용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되는 등 인용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c) J. K. JEONG All Rights Reserved.

인용과 연구윤리

- 특수한 유형의 인용
 - 패러디(parody)

[서울지방법원 2001. 11. 1. 선고2001카합1897결정]

이른바 패러디가 당해 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의 범주로서 허용될 여지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겠으나, 그러한 패러디는 우리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군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이상 그러한 동일성유지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패러디로서 저작물의 변형적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저작권법 제25조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원저작물에 대한 비평 풍자 여부, 원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성격, 이용된 부분의 분량과 질, 이용된 방법과 형태,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 내지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c) J. K. JEONG All Rights Reserved.

인용과 연구윤리

- 특수한 유형의 인용
 - 패스티시(**pastiche**)
 - 패스티시란 다른 작가의 작품으로부터 거의 변형이 없이 원작을 차용하는 것으로서, 표면성의 일관되고 세련된 효과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패러디가 상이성을 모방하는 것과는 달리 유사성을 모방하여 전략적인 담론효과를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공종구, “패러디와 패스티시 그리고 표절 그 개념적 경계와 차이”, 현대소설연구(5권), 1996, 226-230쪽)

(c) J. K. JEONG All Rights Reserved.

인용과 연구윤리

- 특수한 유형의 인용
 - 오마쥬(homage)
 - 오마쥬란 영화에서 존경의 표시로 다른 작품의 주요 장면이나 대사를 인용하는 것을 이르는 용어로서,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 장르에도 널리 이용되는데, 존경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패러디나 표절과는 다르다. 도청을 주제로 현대인의 불안과 강박증을 묘사한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의 <도청>은 이탈리아의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가 감독한 <욕망>에 대한 오마쥬이며, 덴마크 영화감독 라스 폰 트리에의 <범죄의 요소>는 독일 프리츠 랑의 <엠>을 오마쥬한 작품이고, 한국 영화 등에서도 오마쥬가 이용된 사례가 있다고 한다.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c) J. K. JEONG All Rights Reserved.

인용과 연구윤리

- 바람직한 출처표시의 방법
 - 저작권법 제37조
 -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c) J. K. JEONG All Rights Reserved.

인용과 연구윤리

- 지식재산연구원의 [지식재산연구]의 인용방법
 - 저자명, 『서명』, 역자명(역), 판차(2권 이상), 출판사명, 발행연도, 면수.
 - 저자명, "논문명", 편저자, 서명, 판차(2판이상), 권차(2권 이상), 출판사명, 발행연도, 면수.
 - (예시)
 - 홍길동·이몽룡, 『특허법상설』, 제5판, 한세컴출판, 2014, 387면.
 - 홍길동, "지식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의 제문제", 송중기(편), 독점규제법 30년역사, 법문사, 2011.

(c) J. K. JEONG All Rights Reserved.

인용과 연구윤리

- 지식재산연구원의 [지식재산연구]의 인용방법
 - 저자명, 서명(이탤릭), 역자명(역), 판차(2판 이상), 권차(2권 이상), 출판사명, 발행연도, 면수
 - 저자명, “논문명”, 편저자, 서명, 판차(2판 이상), 권차(2권 이상), 출판사명, 발행연도. 면수
 - (예시)
 - **Dicaprio, Leonardo & Winslet, Kate, Intellectual Property Law, Second edition, Oxford, 2004, pp. 25-60.**
 - **Dicaprio, Leonardo & Winslet, Kate, “Antitrust Law Conflict in 000 Case”, Edit. by P. E. Thomas, Antitrust Law, 2nd Edition, Aspen Publicity, 2010. pp.100**

(c) J. K. JEONG All Rights Reserved.

인용과 연구윤리

- 지식재산연구원의 [지식재산연구]의 인용방법
 -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년), 면수.
 - (예시)
 - 홍길동·이몽룡,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문제점”, 『지식재산연구』, 제1권 제1호(2008), 121-125면.
 -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이탤릭), 권호(년), 면수.
 - (예시)
 - **Dicaprio, Leonardo & Winslet, Kate, “Antitrust Law”, IIC, Vol.12 No.13(2014), pp.12-15.**

(c) J. K. JEONG All Rights Reserved.

인용과 연구윤리

- 지식재산연구원의 [지식재산연구]의 인용방법
 - 판례는 법원행정처 발행 「법원공보」나 「대법원판결요지집」의 인용방식에 의한다. 외국의 판례인용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의하도록 한다.
 - (예시)
 - **서울고등법원 2010. 6. 9.선고 2009나96309 판결.**
 - 법률명 제○조 제○항 제○호 ○목.
 - (예시)
 - **특허법 제41조 제5항.**

(c) J. K. JEONG All Rights Reserved.

인용과 연구윤리

- 지식재산연구원의 [지식재산연구]의 인용방법
 - 글쓴이, 「기사제목」, 신문명, 게재일(자).
 - (예시)
 - 홍길동, 「삼성·SK텔레콤·KT, 빅데이터 활용 프로젝트 가동」, 전자신문, **2013. 1. 23**자.
 - 저자명, “기사명”, 사이트명, <주소>, 해당URL작성일자 혹은 검색일.
 - (예시)
 - 홍길동, “삼성전자 특허대응 프로젝트 가동”, 삼성전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30&aid=0002184515>**, 검색일: **2013. 7. 30.**

(c) J. K. JEONG All Rights Reserved.

인용과 연구윤리

- 지식재산연구원의 [지식재산연구]의 인용방법
 - 저자명, “연구보고서명”, 발행처, 발행년도, 면수.
 - (예시)
 - 홍길동, “지식재산과 경제발전 연구: 국내 특허 및 브랜드의 경제적 가치 추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 저자명, “자료명”, 발행처, 발행년도.
 - (예시)
 -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2**차 회의자료”, 대법원, **2015**

(c) J. K. JEONG All Rights Reserved.



길 잃지 말고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c) J. K. JEONG All Rights Reserved.